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국방부

2025년 임금협약(안)

사용자를 대표하는 국방부(이하 ‘국방부’ 라 함)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국방전문상담관지부(이하 ‘조합’ 이라 함)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국방부의 발전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상호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국방부와 조합원 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방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금 결정의 원칙】 임금은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임금의 정의】 임금이라 함은 국방부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조 【임금저하】 국방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지급해 오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 【임금인상】 국방부는 매년 1월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7조【임금지급일】 ①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은 익월 10일, 국방시설본부는 당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소정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제8조【기본급】 2025년 기본급은 전년 대비 기준 1.4%를 인상한다.

제9조【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업무대행 수당】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등에 따라 30일 이상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마채용 직위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직위 업무를 여러 명의 상담관이 대행할 경우 업무대행수당 10만원을 지정 인원수로 나눠서 균등하게 지급하며, 자세한 지급방법은 「업무대행 수당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1조【근속수당】 ① 신규 채용일로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만 3년을 초과하는 조합원부터 아래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

[단위:원]

3~4년차	5~6년차	7~8년차	9~10년차	11~12년차	13년차 이상
10,000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제12조【명절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제13조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지 수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 상담관에게 매월 지급한다.

1. 특수근무지 '가'급 : 100,000원
2. 특수근무지 '나'급 : 80,000원
3. 특수근무지 '다'급 : 60,000원

제14조 【서북도서 근무지원금】 서북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에 거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15조 【연차이월】 ① 조합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미사용 유급 연차는 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최대 이월이 가능한 유급연차는 매년 6일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③ 이월한 유급연차는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복지포인트】 ① 국방부는 조합원에게 연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②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1년 미만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한다.

제17조 【여비】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공무출장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대상은 외부 출장상담을 포함하여 국방부 및 각 군(군단·사단·사령부 등 포함)이 주관 또는 지시하는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개인 희망에 의한 교육, 세미나, 사례발표회 등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임금변동의 사전 통보】 국방부는 조합원의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사전 합의한다.

제19조 【협약서 효력】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업무대행 수당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025년 12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대리인

국방전문상담관

지부장 남 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장관

대리인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과장 정 기 현



6급 / 무창용 / 2025-12-04 09:51

